

인도신문평의회

I. 평의회 설립배경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야와하랄 네루(Jawaharlal Nehru)는 언론자유사상을 피력하면서 「억압 및 통제 받는 언론보다 언론자유의 남용으로 인해 폐단이 있더라도 차라리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을 택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인도에도, 많은 제 3 세계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신문 경영주들이 이윤극대화, 특권향유, 이권취득, 경쟁사 배제를 통한 미디어 독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신문사의 안일주의와 시민의 권익을 경시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자성의 소리도 높아져 갔다. 그리하여 1951년 급기야 언론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언론법(the 'Objectionable Matter' Press Law of 1951)이 제정됨으로써 언론의 무조건적 자유를 다소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조건으로 전인도신문편집인협회와 인도기자연맹이 정부측에 신문위원회(the Press Commission)의 설치를 요구했고, 1952년 9월 동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위원구성에서 언론계 대표가 거의 배제되었다. 신문위원회는, 인도언론을 개선시키려면 언론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는 신문평의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신문평의회법안」을 성립시켰으나, 10년 후인 1965년에야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됐다. 그리하여 1966년 11월 인도신문평의회(the Press Council of India)가 탄생되었다. 그 이후 1975년 6월 인도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인도 신문평의회는 해체되었다 인디라 간디 수상이 이끄는 인도중앙정부는, 신문평의회가 신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했으며, 언론인들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점을 평의회의 해체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평의회해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1978년 신문평의회 정관(the Press Council Act)이 새로 제정되면서 인도신문평의회가 부활되었으며, 1979년 3월 다시 출발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II. 평의회 구성 및 활동

1. 위원구성

의장을 포함한 위원총수는 현재 29명이다. 1970년 전에는 26명이었으며, 1978년 전에는 27명 이었다.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의 위원구성분포는 다음과 같다.

- 언론인 : 13명
- 신문사 경영인 : 6명
- 통신사 경영인 : 1명
- 사회단체 대표 : 3명
- 국회의원(상원 2 · 하원 3) : 5명

언론인출신 위원은 현역 언론인으로서 편집인이 6명, 편집인 외 일반 언론인 7명으로 구성된다. 다시, 편집인 6명은 영자신문 3명, 인도어신문 3명으로, 그리고 일반 언론인 7명은 영자신문 3명, 인도어신문 4명으로 구성된다. 신문경영인출신위원 6명은, 「대신문사」 경영인 2명, 「중신문사」 경영인 2명, 「소신문사」 경영인 2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사회단체출신위원 3명은 대학인가위원회 (the University Grants Commission), 인도변호사평의회(the Bar Council of India) 및 문화진흥원(the Sahitya Academy)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의장선출방식은 현재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및 평의회 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3인 임명위원회에서 전·현직법관 가운데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한다(기타 다른 위원들의 임명방식은 신문평의회정관 제 5 조를 참조할 것).

2. 소위원회 구성

평의회 내에는 7개의 소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즉, 제 1 심의위원회(Inquiry Committee[I]), 제 2 심의위원회(Inquiry Committee[II]), 임명위원회(Selection Committee), 총무위원회(All Purposes Committee),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도서위원회(Library Committee), 신문 및 등록소청위원회(Press and Registration Appellate Board)이다. 여기서, 도서위원회는 1985년 2월에 도서수집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구성되었으며, 7월에 심의위원회가 불만호소 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둘로 나뉘어 짐으로써 소위원회의 수가 이전 5개에서 7개로 증가되었다. 각 소위원회는 평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의장은 7개 소위원회의 겸임위원장이 된다. 각 위원들은 우선 제 1, 제 2 심의위원회에 반반씩(14명씩) 소속되며 이와 동시에 나머지 5개 소위원회 가운데 어느 한 소위원회에 소속하게 된다. 각 소위원회의 소속 위원 수는 다음과 같다. (평의회 의장을 제외한 숫자임)

- 제 1 심의위원회 : 14명
- 제 2 심의위원회 : 14명
- 임명위원회 : 4명
- 총무위원회 : 15명
- 재정위원회 : 4명
- 도서위원회 : 4명
- 신문 및 등록소청위원회 : 1명

(여기서 임명위원회, 재정위원회는 신문사 경영인 2명, 편집인 1명, 일반언론인 1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3. 활 동

인도신문평의회 특징은 법정자율규제기관이라는 점이다. 또한 평의회 목적은 신문평의회정관 제 3장 제 13조 1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의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인도신문평의회는 신문사 및 통신사를 상대로 한

불만호소 건만을 접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의 개인적 비행과 정부의 언론규제에 대한 불만호소까지도 취급한다는 점이 기타 외국의 신문 평의회들과 다른 점이다(평의회의 불만호소 건 접수 범위에 대해선 불만호소절차 및 심의절차를 참고할 것. 또한 평의회의 자세한 활동 및 기능에 대해선 신문평의회 정관 제 13, 14, 15 조를 참고할 것). 평의회 위원총회는 일년에 4 번 개최되며, 평의회활동을 전반적으로 논의, 검토하게 된다. 특히, 평의회는 「신문 및 등록소청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평의회의 주요한 보조기구로서, 정부가 「신문 및 출판등록법」(Press and Registration of Books Act of 1867)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는 데 있어 신문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관한 불만호소를 접수 처리하는 평의회 내의 보조 기구이다.

4. 재 정

평의회에 필요한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보조금과 각 신문사 및 통신사가 지급하는 회비와 평의회 스스로의 수입에 의해 충당된다. 재정의 큰 비중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보조금지급은 중앙정부의 「정보 및 방송부」(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가 관할한다. 또한 평의회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는 중앙감사원(Audit Central Revenue)이 맡게 된다. (신문평의회정관 제 16 조~제 22 조 참고).

III. 불만호소절차

1. 불만호소조건

- (1) 어느 누구든지, 신문보도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신문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불만을 평의회에 호소할 수 있다.
- (2) 불만호소인이 반드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 (3) 불만호소의 대상은 신문기사의 전반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신문에 게재된 만평·삼화·사진·4컷 연재만화와 광고도 포함하며, 특정사건 및 특정사실에 대한 「불게재」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기자의 직업상 비행에 대해서도 불만을 호소할 수 있다. 이때 기자는 신문사내의 기자일수도 있고 자유기고가 (freelancer)일 수도 있다. 그리고 통신사의 통신문이 잘못 났을 경우도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다.
- (4) 불만호소접수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 2개월 이내 유효-통신의 통신문을 포함한 일간지 및 주간지의 경우와 특정사건·특정사실에 대한 「불게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됨.
 - ㉡ 4개월 이내 유효-기타 다른 경우 보도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 유효하며, 편집인이나 기자의 직업상 비행에 대한 불만호소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2. 선행조건 및 불만호소절차

(1) 불만호소인은 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해당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접촉해야 한다. 이때 문제된 보도의 게재일자와 불만호소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편집국장과 불만호소인이 직접 대면함으로써 해결책을 신속, 용이하게 찾기 위함이다. 이러한 원칙은 해당 신문사편집국장으로 하여금 불만호소인의 신원파악과 불만호소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준바 불만호소인이 직접 해당 신문사를 접촉하게 될 경우, 만약 자신의 불만호소이유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으며, 보도에 의한 침해사실이 편집인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해도 쉽게 정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불만호소인 이 해당 신문사의 반응이나 정정보도에 만족하게 되면 사건은 그 상태에서 종결된다.

(3) 불만호소인이 해당 신문사와 접촉한 후, 신문평의회에 계속 불만을 호소하길 원한다면, 해당 신문사 편집국장과 교환한 서신의 사본도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문사 편집국장으로부터 아무 반응도 얻지 못 했다면 그 사실도 불만호소 시에 밝혀야 한다.

(4) 불만호소인이 불만을 호소할 경우 해당 신문명과 편집국장 내지는 해당 기자의 성명과 신문사의 주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문제된 기사의 원본과 불만호소이유서도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관계자료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5) 특정사실에 관한 「불거재」 건에 대한 불만 호소일 경우, 그 건의 저널리즘윤리 저촉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6) 평의회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심의할 수 없다. 불만호소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의회에서 선서해야 한다. ① 불만호소이유에 대한 명확한 지식 및 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 ② 불만호소사안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지 않다는 사실 ③ 불만호소사안이 법원의 어느 사법절차 중 주요문제로 부각될 경우 즉시 평의회에 통지하겠다는 점.

3. 언론자유침해에 대한 불만호소

(1) 신문사, 기타 언론기관 및 기자와 자유기

고가들은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 받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할 수 있다. 불만호소 시 침해사실에 대한 관계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앞의 (1)의 경우에 대한 평의회는 평결내용은 다음 두 가지 사항도 포함하게 된다.

- ① 언론자유를 남용을 목과할 수 없는 점
- ② 신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널리즘의 기본윤리를 위배해서는 안되며, 불공정한 보도를 함으로써 기존의 언론자유를 퇴색시켜선 안된다는 점

IV. 심의절차규칙

1978년 제정된 인도신문평의회 정관 제 26 조 3 항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신문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정한다.

1. 서 두

(1) 이 규칙은 「1979년 신문평의회심의절차규칙」 the Press Council(Procedure for Inquiry) Regulations, 1979] 이라 칭한다.

(2) 이 규칙은 관보에 게재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 정 의

문맥상 다른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 한, 본 규칙 안에서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Act)이란 용어는 1978년 제정된 인도신문평의회 정관을 의미한다.

(2) 「위원회」 (Committee)라는 용어는 신문평의회 정관 제 13 조 2 항과 제 14 조 1 항에 규정된 심의 목적을 위해 정관 제 8 조 1 항에 의거해 구성된 심의위원회(Inquiry Committee)를 뜻한다.

(3) 「평의회」 (Council)라는 용어는 정관에 의해 발족된 인도신문평의회를 뜻한다.

(4) 「불만호소인」 (Complainant)이란 용어는 신문평의회 정관 제 14 조 1 항에 의거해 제기된 불만호소 건에서 신문사나 통신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한 사람이나 기관을 가리킨다.

(5) 「보도문」 (Matter)이라는 용어는 통신사통신문을 전제한 보도를 포함하여 신문사 자체적으로 보도한 스트레이트기사, 논평기사 및 일반기사와 함께 만평, 삽화, 사진, 4컷 연재만화, 광고들을 다 포함하여 일컫는다.

3. 불만호소요건

(1) 불만호소인은 다음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 먼저 문제된 신문사명과 주소 및 편집인 또는 기자의 성명을 기입해 제출할 것, 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문제됐을 경우, 기사원본과 관계자료를 제출할 것, 또한 특정사실·특정자료에 대한 「불게재」 건일 경우는 그 자료에 대한 원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것.

㉡ 평의회 정관 제 14 조 1 항 규정의 의미 안에서 불만호소이유를 밝힐 것.

㉢ 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하기 전에, 불만호소인은 신문사측에 분쟁이 된 보도문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하며 불만호소이유도 밝혀야 한다. 특정사실·특정자료의

「불게재」 건도 마찬가지로 방식이다. 불만호소인은 또한 피 호소인측과 교환한 서신들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평의회 의장의 재량에 따라 서신제출조건을 배제할 수도 있다.

㉔ 불만호소인은 자신과 관련된 사실들을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하며, 이 조건은 일반 불만호소 건뿐만 아니라 편집인이나 기자들의 비행에 대한 불만호소 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㉕ 모든 경우에서 관련 사실들이 평의회에 제시되어야 한다.

㉖ (i) 일반 불만호소접수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㉗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2 개월 내

㉘ 기타 다른 경우-4 개월 내(문제된 보도일자로부터의 경과기일을 뜻함)단, 문제된 보도와 관련된 보도문도 불만호소 건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편집인이나 기자의 비행에 대한 불만호소건은 비행이 발생한 후 4 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단, 불만호소인 이 소정기간 내에 불만을 호소했더라도 평의회에 서류접수 시키는 과정에서 지연됐거나, 평의회가 서류 및 자료구비조건 검토과정에서 지연됐거나, 아니면 기타 지연될만한 충분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소정기간이 다소 도과되었더라도 불만호소 건이 성립될 수 있다. 소정기간의 도과 사실에 대한목인권한은 평의회 의장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데 평의회 위원들의 찬동이 있어야만 한다.

(2) 불만호소인은 다음 사항들에 선서한 후서 명해야 한다.

㉙ 평의회에 제시된 불만호소 건 및 관련사실 들에 대해, 불만호소인이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과 문제된 보도가 법원 소송절차에 계류 중이지 않다는 사실.

㉚ 불만호소건이 법원 소송절차에서 주요사안으로 부각되면 즉시 평의회에 통지하겠다는 점

4. 불만호소건 접수보류사유

(1) 불만호소인 이 심의절차규칙 3 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불만호소 건을 접수시킬 경우 평의회 의장은 조항규정 준수를 요청하면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대신 불만호소건 접수유효기간을 적절한 시기까지 연장해 줌으로써 불만호소인으로 하여금 구비서류를 제출할 여유를 부여할 수도 있다.

(2) 불만호소인은 불만호소건 접수거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평의회로부터 통지받게 된다.

5. 소명자료요청조항

(1) 불만호소건이 일단 접수되면 접수일자로부터 15 일 이내에 의장허락 아래 관계서류의 사본이 피불만호소인측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때 평의회는 피불만호소인측에게, 소인을 밝혀 주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소명자료요청 통지서를 함께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의장재량에 따라 통지서 발송을 늦출 수도 있다. 단, 불만호소건이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의장이 판단할 경우, 소명자료요청 통지서발송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통지서발송 중지 이유를 다음 심의 회의에서 밝혀야 하며, 그 결정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시행된다.

(2) 피불만호소인측에 소명자료요청통지서를 발송할 경우, 등기 및 수취인 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6. 서면진술서 및 보충진술서

- (1) 피불만호소인측은 문제된 보도문 사본 및 소명자료요청통지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특별히 평의회 의장의 허락이 있었을 경우 다소 연장된 기한 내에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평의회는 서면진술서를 접수하게 되면 그것의 사본을 불만호소인에게 보내야 한다.
- (3) 평의회가 불만호소건을 접수한 후, 의장의 판단에 따라 불만호소인에게 더 많은 정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평의회가 피불만호소인측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접수한 후, 의장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불만호소인측에 더 많은 자료 및 보충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된 정보, 자료 및 보충진술서는 사건기록서류일부분으로 채택되며, 심의위원회 회의 때 제시되게 된다.

7. 부가자료요청권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서류, 자료 및 서면진술서 등을 검토한 후, 문제된 보도문과 관련된 상세한 부가적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당사자 양쪽이나 한쪽에만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8. 불만호소건의 중복

접수된 불만호소건이 이전에 평의회에서 심의된 사안과 본질상 동일할 경우, 또한 먼저 심의된 사안에 의해 현 사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경우, 그 시점에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중단하고 불만호소인의 의사를 물어 불만호소인 단독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정에 따라 피불만호소인 측도 청문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한편 현 불만호소사안이 이전사안과 본질상 동일하다는 사실은 사건당사자양측에 정식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9. 심의업무

- (1) 청문회 시간, 일자, 장소에 대한 통지서는 등기 및 수취인증명 우편으로 사건관계자 쌍방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관계 증거 자료들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예증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 자료들은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과 취지를 옹호해 주는 데 이용될 수 있다.
- (2) 심의위원회의 청문회 및 심의가 종결 될 즈음 불만호소건에 대한 심의보고서가 작성되며, 그 보고서는 평의회 위원총회로 이송된다.

10. 평의회의 결정

- (1) 평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송돼온 심의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평결을 내리거나 경우에 따라서 심의보충을 위해 심의보고서를 심의위원회로 환송시킬 수 있다.
- (2) 평의회의 모든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투표 및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이뤄진다. 만일 찬반 동수일 경우, 평의회 의장에게만 결정투표권(casting vote)이 부여돼 있다.

(3) 평의회 평결내용은 서면으로 당사자 쌍방에 전달되어야 한다.

11. 대리인 출석

정부를 포함한 피불만호소인측은 평의회 혹은 심의위원회 재가 아래 청문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변호사이거나 정식으로 법정 위임된 대리인이어야 한다.

12. 회의참석 및 투표제한규정

평의회 위원이라 해서 누구든지 심의회의를 포함한 회의참석권 및 투표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즉, 특정위원이 불만호소건과 개인적으로 연루돼 있거나 본인이나 배우자와의 직·간접적 이익관계에 있거나 직업상 이익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 회의 참석권 및 투표권이 제한된다.

13. 평결문 발표

평의회 의장은 평의회 평결내용에 따라 평의회 정관 제 14 조 1 항 규정과 관계된 문제에 관해 평결문을 발표하거나 특정행동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평의회 정관 제 13 조 2 항에 규정된 권한들도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14. 부가적용조건

불만호소건이 평의회 정관 제 14 조 1 항과 관계될 경우, 본 심의규칙에 규정된 절차는 정관 제 13 조에 불만호소건이 관계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5. 규칙보충권한

평의회 및 심의위원회는 본 규칙 속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스스로 절차를 규정할 권한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정사건에 있어 사진촬영을 금지시킬 권한도 갖고 있다.

V. 신문평의회 정관 (The Press Council Act, 1978 년)

이 정관은 인도의 언론자유를 보전하고, 언론 매체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된 신문평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인도공화국 수립 제 29 주년 되던 해에 국회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제 1 장 전 문

제 1 조 약칭 및 적용범위

1. 이 정관은 「1978 년 신문평의회 정관」이라 칭한다.
2. 이 정관은 전 인도에 걸쳐 적용된다.

제 2 조 정 의

이 정관에서 맥락상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1. 「의장」은 평의회의 의장을 의미한다.
2. 「평의회」는 제 4 조에 의거해 설립된 인도신문평의회를 의미한다.

3. 「위원」은 평의회의 위원을 의미하며, 여기에 의장도 포함된다.
4. 「규정되다」는 이 법이 제정한 규정들이 규정하는 바를 의미한다.
- 5 「편집인」과 「신문」이라는 용어는 1867년 「신문·출판 등록법」에서 각각 지칭되었던 의미를 가지며, 「현직 언론인」이란 용어는 1955년의 「현직 언론인 및 기타 신문사 고용자 용역규칙 과 잡규정법」에서 한정된 의미를 갖는다.

제 3 조 - 생략

제 2 장 신문평의회의 설립

제 4 조 법인 설립

1. 중앙정부의 관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일자로부터 발효하는 평의회는 「인도신문평의회」라는 명칭으로 발족한다.
2. 동 평의회는 하나의 직인을 보유하는 영구 계승적인 법인체이며, 동 명의로 제소할 수도 과 잡규정법」에서 한정된 의미를 갖는다.

제 3 조 - 생략

제 2 장 신문평의회의 설립

제 4 조 법인 설립

1. 중앙정부의 관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일자로부터 발효하는 평의회는 「도신문평의회」라는 명칭으로 발족한다.
2. 동 평의회는 하나의 직인을 보유하는 영구계승적인 법인체이며, 동 명의로 제소할 수도 있고, 피소될 수도 있다.

제 5 조 평의회의 구성

1. 평의회는 의장 1명과 위원 28명으로 구성된다.
- 2 의장은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그리고 제 5 조 6 항에 의해 지명된 1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그렇게 이뤄진 임명은 중앙정부가 관보에 발표하는 일자부터 발효하게 된다.
3. 다른 위원들에 관하여는 -
 - (1) 위원 28명 중 13명은 별도 규정에 따라 현직 언론인 가운데서 임명된다. 그들 13명 중 6명은 신문사의 편집인들로, 나머지 7명은 편집인 외의 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인도지방고유언어로 발행하는 신문사들에 소속된 언론인들이 각각 6명 중 3명과 7명 중 4명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 (2) 위원 28명 중 6명은 별도 규정에 따라 신문사 소유주이거나 경영진에 포함된 자에서 임명된다. 그러나 신문사를 대신문사, 중신문사, 소신문사 3 개의 범주로 나누어 각각에서 2 명씩 고루 선출되도록 한다.
 - (3) 위원 28명 중 1명은 별도 규정에 따라 통신사 경영자중에서 임명되도록 한다.
 - (4) 위원 28명중 3명은 교육 · 과학 · 법률 · 문학 · 문화 등과 관련된 업무에 실제 종사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사라야 하며, 대학인가위원회(the University

Grants Commission) · 인도변호사평의회(the Bar Council of India) · 문화진흥원(Sahitya Academy)에서 각각 1 명씩 임명하게 된다.

(5) 위원 28 명 중 5 명은 국회의원가운데서 임명되도록 한다. 그 중 3 명은 하원의원 가운데서 하원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나머지 2 명은 상원의장이 상원의원 가운데서 임명하도록 한다.

단, 신문사를 소유하거나 경영진에 속한 현직 언론인은 제 5 조 3 항 (1)번에 의거한 임명 조건에서 제외된다.

단, 제 5 조 3 항 (1)번, (2)번에 의거해 임명되는 인사 가운데서, 동일한 경영통제나 관리 하에 있는 신문사나 신문사그룹에 관계된 인사는 1 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설명-제 5 조 3 항 (2)번에서 언급된 것처럼 신문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ㄱ) 「대신문」 - 총발행 부수가 5 만부를 넘는 경우

(ㄴ) 「중신문」 - 총발행 부수가 1 만 5 천부 이상 5 만부 미만인 경우

(ㄷ) 「소신문」 - 총발행 부수가 1 만 5 천부 미만인 경우

4. 제 5 조 3 항의 (1), (2), (3)번의 경우를 통해 위원임명이 이뤄질 경우, 위원회 구성 초기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위원회 2 차 구성 시기부터는 전임 위원장이 퇴임 시 제 5 조 3 항의 (1), (2), (3)번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명된 후보 위원들의 명단을 요청하게 된다.

제 5 조 3 항 (3)번에서 언급된 인사와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각 통신사는 후보위원 명단을 요청 하게 된다.

5. 중앙정부는 제 5 조 (3)항에 의거하여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이름을 관보에 게재하여 통지해야 하며, 관보에 게재된 일자부터 임명의 효력이 발생한다.

6. 제 5 조 5 항에 의해 관보에 통보된 평의회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제 5 조 2 항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 1 인을 그들 가운데서 선출한다. 이 호선을 위해 개최되는 위원회는 그 위원들 가운데서 선출된 1 인이 주재하도록 한다.

제 6 조 위원 임기 및 임명

1.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장 및 다른 위원들은 3 년 동안의 재임기간을 갖는다.

단, 의장은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난 후 평의회가 재구성될 때까지 계속 재임할 수 있으며, 재구성이 늦어질 경우 6 개월까지 재임할 수 있다.

2. 제 5 조 3 항 (1), (2), (3)번 규정에 의거해 임명된 위원이 제 14 조 1 항에 의거해 견책받을 경우, 그 위원은 위원직을 사임하게 된다.

3. 제 5 조 3 항 (5)번 규정에 의거해 임명된 위원이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게 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평의회 위원직도 곧 사임해야 한다.

4. 어느 위원이 타당한 이유없이 평의회 회의 3 차례 계속해서 결석하면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의장은 스스로 사임할 경우 중앙정부에 서면통고해야 하며, 일반 위원들도 스스로 사임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의장이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의장직이나 일반 위원직은 곧 공석으로 처리된다.

6. 제 6 조 2, 3, 4, 5 항과 기타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공석은 가능한 한 빨리 사임한 위원이 임명된 방법으로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임명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동안만 재임 하게 된다.

7 퇴임위원은 1 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 임명 될 수 있다.

제 7 조 위원 봉직조건

1. 의장은 상근임원이며, 중앙정부가 인정한 보수를 받게 된다. 그리고 다른 일반 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평의회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이나 사례금을 받게 된다.

2. 제 7 조 1 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들의 봉직조건이 정해져야 한다.

3. 평의회 위원이 국회 양원 가운데 어느 원의 의원으로 당선되거나 아니면 현 의원이라고 해서 위원자격을 상실하지 않음을 이에 따라 천명 되어야 한다.

제 8 조 평의회의 소위원회

1. 평의회는 이 정관규정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일반적 혹은 특수목적을 위해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렇게 설치되는 각 위원회는 평의회가 위임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

2. 평의회는 제 8 조 1 항에 의해 구성된 각 소위원회에 평의회 위원이 아닌 인사들을 영입할 권한을 갖고 있다.

3. 제 8 조 2 항에 의해 소위원회에 영입 된 위원은 소속된 위원회의 참석권 및 토의참여권은 부여받지만 투표권은 없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선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9 조 평의회 및 위원회 회의

평의회와 각 소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회의를 열어야 하며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평의회 진행

평의회의 조치나 회의진행이, 평의회 위원직에 공석이 발생하거나 정관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는다.

제 11 조 평의회 사무국

1. 중앙정부가 제정한 규정에 의거해서, 평의회는 본 정관에 명시된 평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1 인과 다른 사무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다.

2. 사무직원들의 근무조건 및 기간은 운영규칙에 따라 정한다.

제 12 조 평의회 결정 및 문서 인증

평의회의 모든 명령과 결정들은 의장이나 평의회가 위임 승인한 다른 위원에 의해 서명날인되어 인증되어야 한다. 평의회에서 발급되는 운서들도 사무국장의 서명날인이 있거나 평의회가 위임 승인한 다른 직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3 장 평의회의 권한 및 기능

제 13 조 평의회의 목적과 기능

1. 평의회의 목표는 언론자유를 보전하고, 인도내의 각 신문사 및 통신사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2. 평의회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 (1) 신문사들과 통신사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 .
- (2) 높은 수준의 직업적 준칙에 일치하도록 신문, 통신사 및 기자들을 위한 실천강령을 정립하는 일.
- (3) 신문사, 통신사 및 기자들을 대신하여 공공의 기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일.
- (4) 모든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책임감과 공공봉사정신을 고취시키는 일.
- (5) 중요하며 공익에 관계된 「뉴스」의 공급 및 유통을 제한할 만한 사태발전을 주시하는 일.
- (6) 중앙정부, 개인, 협회, 및 일반단체가 평의회에 제기하는 사안들 뿐만 아니라 신문사나 통신사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사례들을 관찰하는 일.
이런 조항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신문사나 통신사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사안들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7) 인도 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의 대사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들 뿐만 아니라 외국 신문들의 발행부수와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일(여기서 「외국」이라는 말은 1908년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 87 조 A 항에서 언급된 「외국」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 (8) 신문의 제작 또는 간행이나 통신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적절한 직능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일(단, 1947년 제정된 노동쟁의 조정법
- (9) 언론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언론매체의 소유독점화 현상을 예의 주시하는 일.
- (10) 중앙정부가 평의회에 위촉한 연구를 수행하는 일과 중앙정부가 평의회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일.
- (11) 앞의 제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며, 필요한 기타 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일.

제 14 조 견책권

1. 평의회는 일반적 방법으로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불만호소를 접수하게 되면, 먼저 신문사나 통신사가 신문윤리 강령이나 공적 품위(public taste)를 위 반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또 편집인이나 현직 기자가 직업상의 비리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신문사, 통신사나 편집인 혹은 기자에게 우선 응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본 정관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명시된 방식대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언론매체나 해당 언론인에게 서면으로 제재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경고(warn), 주의 환기(admonish), 견책(censure)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편집인이나 기자의 행위를 비난할 수 있다.

단, 평의회 의장의 판단 아래 심의할만한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불만호소에 대한심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2. 평의회는 공익에 필요하거나 마땅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어느 신문사, 통신사 혹은 편집인, 현직 기자에 대한 심의관계자료 내용을 평의회가 인정한 적절한 방식에 따라 어떠한 신문에라도 게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게재내용에는 심의대상이 된 신문사, 통신사 또는 편집인이나 기자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다.

3. 제 14 조 1 항의 어느 조항도 평의회에 현재법원에 계류중인 소송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4. 제 14 조 1 항과 2 항에 의거한 평의회 결정은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것이며, 어떤 법정에서도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제 15 조 정의회의 일반 권한

1. 평의회는 본 정관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하거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 문제들에 관해 1908 년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처리하고 있는 민사법원이 갖고 있는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인도 전역을 통해 갖는다. 권한을 갖게 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자 소환 및 출두강요와 선서한 자들에 대한 심문.

(2) 관계 문서에 대한 공개 및 조사요청.

(3) 선서진술서에 대한 증빙자료 접수.

(4) 법원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 기록이나 그 사본에 대한 요구.

(5) 증인심문 및 문서검토를 위한 위임장 발급.

(6) 기타 규정된 다른 문제.

2. 제 15 조 1 항이 당해 언론사나 언론인으로 하여금 문제된 보도의 정보원공개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 돼서는 아니 된다.

3. 평의회가 행하는 모든 조사는 인도형법 제 193 조와 제 228 조에서 규정된 의미의 사법절차로 간주된다.

4. 평의회는, 본 정관에 따라 그 목적달성과 기능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당국의 어떤 행위에 대해 「결정」이나 「보고」를 통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바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제 16 조 부금 할당

1. 평의회는 본 정관에 명시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신문사들과 통신사들로부터 규정된 비율과 방식에 따라 기부금을 할당할 수 있으며, 발행부수 및 기타 사항과 관련지어 각 신문사에 대해 각기 다른 비율을 책정할 수 있다.

2. 제 16 조 1 항에 규정된 것처럼, 신문사들이 평의회에 기부금을 납부한 후 국세를 기부금 액수만큼 체납할 수 있다.

제 17 조 평의회에 대한 지원금

중앙정부는, 국회가 법에 따라 지출을 승인하게 되면 본 정관에 따른 평의회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평의회에 무상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평의회 기금

1. 평의회는 자체적 기금을 소유할 수 있다. 평의회가 수납하는 언론사의 회비기부금, 중앙정부가 종종 평의회에 지급하는 모든 지원금 및 기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평의회에 제공하는 기부금과 선금은 평의회기금에 적립되며, 평의회 모든 지출경비는 그 기금으로부터 조달된다.

2. 기금에 속한 모든 돈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평의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은행에 예치 하거나 투자한다.

3. 평의회는 본 정관에 의거한 기능 수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경비는 지출할 수 있으며, 이 경비는 평의회기금에서 지급 가능한 경비로 처리된다.

제 19 조 평의회 예산

평의회는 규정대로 다음 회기년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적절한 형태와 적당한 시기에 매년 세워야 한다. 또한 예산서의 사본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연차보고서

평의회는 규정대로 매년 전년도의 연차보고서를 적절한 형태와 적절한 시기에 간행해야 한다. 그 연차보고서는, 평의회 전년도 활동상 황에 대한 요약 및 신문사, 통신사 보도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보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된다. 또한 연차보고서의 사본과 본 정관 제 22 조에 규정된 방식대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것들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 임시 보고서

제 20 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평의회는 회기년도 중간에 공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업무보고를 위해 임시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임시보고서의 사본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것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회계 감사

평의회는 인도의 회계감사관 및 감사원장과의 협의 하에 규정된 방식대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기타

제 23 조 법적 보호

1. 본 정관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나 성실하게 행해진 업무와 관련해, 평의회나 그 위원 혹은 평의회 지시로 활동한 개인을 상대로 고소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평의회 직권에 따라 어떤 사안에 대한 게재 문제에 관해 신문사를 상대로 고소나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4 조 위원 및 직원 대우

평의회 모든 위원, 사무국 직원, 기타 고용원들은 인도형법 제 21 조에 규정된 의미의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제 25 조 운영규칙

1. 중앙정부는 본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규칙을 제정한 후 관보에 등재할 수 있다. 단, 평의회가 이미 설립되었을 경우는 평의회와 협의한 후 운영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2. 특히 전술한 권한의 일반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규칙은 다음의 문제를 전부내지는 부분적으로 다룰 수 있다.

(1) 본 정관 제 5 조 3 항의 (1), (2), (3)번에 의거한 평의회 위원들의 임명절차

(2) 본 정관 제 5 조 4 항에 의거한 위원 피추천자 명단 제출방식.

(3) 본 정관 제 5 조 6 항에 의거해 제 5 조 (2)항에서 언급한 위원선출절차.

- (4) 평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경비와 본 정관 제 7 조 1 항과 2 항에의 거 한 위원들의 업무조건.
- (5) 본 정관 제 11 조에 의거한 사무국장 및 기타 사무직원들의 임명조건.
- (6) 본 정관 제 15 조 1 항의 (6)번과 관계된 문제들.
- (7) 본 정관 제 16 조에 의거해 평의회가 할당할 수 있는 기부금비율과 이 같은 기부금에 대한 할당방식 .
- (8) 본 정관 제 19 조와 제 20 조에 의거하여, 평의회가 예산안과 연차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와 각각의 형태.
- (9) 본 정관 제 22 조에 의거하여, 평의회가 회계감사 받는 방식.

3. 본 정관 제 25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모든 규칙은 제정 후 가능한 한 발리 국회 양원에 회기 중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양원이 소정의 회기가 만료되기 직전 이 같은 규칙을 수정기로 합의할 경우, 또는 양원이 이 같은 규칙 제정을 불허기로 합의할 경우, 이 규칙은 양원의 합의대로 수정된 규칙에 한해서 유효하거나 아니면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수정이나 무효가 이뤄지더라도 이 규칙에 의거해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효력은 침해되지 않는다.

제 26 조 내규제정권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위해 본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규칙과 그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 (1) 본 정관 제 9 조에 의거한 평의회 회의나 소위원회 회의 및 업무진행에 대한 절차규정.
- (2) 본 정관 제 11 조 2 항에 의거한 평의회 고용인들에 대한 근무조건 명시조항.
- (3) 본 정관에 의거한 심의 조사실시 방식규정.
- (4) 평의회가 규정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에 따라 본 정관 제 18 조 3 항에 의거한 권한 중 어느 부분이든지 의장이나 사무 국장에게 위임하는 절차.
- (5) 본 정관에 의거하여 시행령이 규정하는 기타 다른 문제.

단, 본 정관 제 26 조 (2)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시행령은 중앙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제정될 수 있다.

제 27 조 부가조항

1867 년 제정된 「신문·출판등록법」 (the Press and Registration of Books Act, 1867) 제 8-C 조 (1)항에서, 「중앙정부가 의장과 다른 위원들을 임명한다」 라는 조항은 「1978 년 제정된 신문평의회 정관 제 4 조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인도신문평의회가 의장과 다른 위원들을 임명한다」 는 조항으로 대체된다.